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 인 제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 · 동료 의원님 여러분!

기획경제위원회,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
이 성 배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,

-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「지방공기업법」의
규정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
써, 서울시 공기업 사장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.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의2(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)의 2항에는 지
방자치단체장의 장과 사장은 경영성과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는 임
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,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
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- 서울시 공기업 5곳 중 1곳, 농수산식품공사만이 상위법에 근거하여

조례를 통해 사장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. 나머지 4곳의 공기업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.

| | |
|--|--|
| <p>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 <p>제9조(사장)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.</p> | <p>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p> <p>제8조(사장) ③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,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</p> <p><개정 2019. 3. 28.></p> |
|--|--|

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중 “총괄한다”를 “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”로 변경하는 것입니다.

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- 「지방공기업법」에서 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을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명시한 것은 공기업이 공공복리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윤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는 것입니다.
- 본 조례안은 공기업의 적자가 만연한 상황에서 사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공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하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